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20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0.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538,900원, 지방교육세 4,144,250원, 농어촌특별세 2,781,730원 및 가산세 30,79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재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8. [redacted]시 C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위 회사는 그 이후 '주식회사 B'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본점을 '[redacted]시 D'로 이전하였는데, 2016. 4. 22. 그 설립 목적을 '테이프류 제조 및 판매업, 종이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7. 4. 5. 다시 본점을 '[redacted]시 E'으로 이전한 뒤, 2017. 6. 13. 회사명을 현재의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2014. 6. 20.경 당시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위 각 회사명과 관계 없이 '원고'로 통일하여 지칭한다)는 2014. 6. 20.부터 2015. 1. 29.에 이르기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redacted]시 F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업종을 '인삼식품 제조업'으로 하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7. 11. 28. 법률 제15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업종의 변경 없이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2. 1. 창업사업계획 변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6. 2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업종을 '인삼식품 제조업'에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바꾸고,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 [redacted]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6. 10. 28. 그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2. 28.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업종을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으로 바꾸고, 용지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당초 승인받은 용지면적 중 도로 1,696㎡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거의 같다)으로 구 [redacted]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7. 3. 2. 그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12.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는 법인등기부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16. 4. 22.경 최초 창업했던 '인삼식품 제조업'이 아닌 '종이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라 한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창업했던 업종인 '인삼식품 제조업'이 아닌 '종이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1],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1)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원고가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자는 2016. 10. 28.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후술하는 사단법인 G의 인삼사업 관련 발표일자와 법인등기부상 변경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은 최초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인 2014. 6. 20.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다.

사. 이후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76,696,240원, 지방교육세 5,719,430원, 농어촌특별세 3,844,860원 합계 86,260,530원(각 가산세포함)을 추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는 것이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까지 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의 변경은 기존의 창업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창업의 연장선에 있는 실질적 창업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사업과 동일한 범위에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한 추징을 할 수 없다(원고의 ① 주장).

나. 위 단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세업체인 원고가 대기업과의 인삼 제조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피고와 수차례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업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위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거나 다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원고의 ② 주장).

다.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원고의 ③ 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소정의 '[redacted]'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 "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은 같은 형태의 규정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2) 먼저 당사자간 적용 법률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8조의3이 신설되었고, 그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와 추징을 규정하였다가[2]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최초로 취득세의 면제신청을 한 2014. 6. 20.경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이 시행되던 2015. 1. 1.부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각 취득세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해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정의규정 및 취득세 감면 등을 배제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 제100조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위 규정에서 정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3]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4조 참조
3)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7항 제1호는 위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의 추징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기존에 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별도의 기업설립 과정 없이 그 업종만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이전에 영위하던 업종은 '인삼식품 제조업'으로서 인삼식품 제조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농지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영위하게 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2017. 1.경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용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이후에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창업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세 면제 요건인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당시 대표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인적 조직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상당 부분과 종전 자산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④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관련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업종을 '변경'한 중소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인삼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사단법인 G가 2015. 4.경부터 농림부 산하 단체가 아닌 자도 인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대기업에서 인삼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수익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에 있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을 갖추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법령의 부지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지방세기본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들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별지 1]

지방세 부과액표

단위 : 원

순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1	2,009,320	200,930	100,460	1,280,360	3,591,070
2	2,183,200	218,320	109,160	1,391,170	3,901,850
3	3,415,200	89,090	296,970	2,128,510	5,929,770
4	1,140,000	114,000	57,000	726,420	2,037,420
5	6,185,610	161,360	537,870	3,855,170	10,740,010
6	8,560,000	856,000	428,000	5,454,590	15,298,590
7	280,000	28,000	14,000	178,410	500,410
8	1,475,200	147,520	73,760	940,020	2,636,500
9	244,000	24,400	12,200	155,470	436,070
10	2,394,000	239,400	119,700	1,525,480	4,278,580
11	18,765,870	1,876,580	938,290	11,957,960	33,538,700
12	1,886,500	188,650	94,320	1,202,090	3,371,560
합계	**48,538,900**	**4,144,250**	**2,781,730**	**30,795,650**	**86,260,53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별지 2]

별지 1 지방세 부과액표 기재 각 순번의 과세대상

1. 토지 [redacted] 401.4200㎡ 공유분할(지분초과분) (2016. 4. 22. 목적미사용)
2. 토지 [redacted] 401.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3. 토지 [redacted] 1186.5800㎡ 공유분할 (2016. 4. 22. 목적미사용)
4. 토지 [redacted] 외 1필지 200.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5. 토지 [redacted] 2149.1200㎡ 공유분할(자기지분) (2016. 4. 22. 목적미사용)
6. 토지 [redacted] 1572.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7. 토지 [redacted] 131.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8. 토지 [redacted] 271.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9. 토지 [redacted] 36.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10. 토지 [redacted] 외 2필지 420.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11. 토지 [redacted] 외 1필지 3749.0000㎡ 매매 (2016. 4. 22. 목적미사용)
12. 토지 [redacted] 376.8800㎡ 공유분할(지분초과분) (2016. 4. 22. 목적미사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별지 3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11. 28. 법률 제15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끝.